

대학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 및 소속) 본 교회는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대학교회, 아산캠퍼스 대학교회(이하 “대학교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호서대학교에 소속한다.

제 2 조 (목적) 본 대학교회는 독립교회로서 초 교파적 활동을 지향하며, 본 대학 교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, 그들이 확고한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하며 또한 사랑의 실천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장 조 직

제 3 조 (담임목사) 본 대학교회는 담임목사를 두며, 담임목사는 교목실장이 위촉한다.

[전문개정 2018. 7. 11]

제 4 조 (교회위원회) 본 대학교회는 호서대학교와의 협력과 교회의 운영을 위하여 담임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[제목개정 2018. 7. 11], [전문개정 2018. 7. 11]

제 3 장 재 정

제 5 조 (재정) ① 본 대학교회의 재정은 현금과 기부금으로 한다.

② 본 대학교회의 매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은 교회 내규에 따라 시행한다.(개정 2018. 7. 11)

③ (삭제 2018. 7. 11)

제 6 조 (시행세칙) 본 대학교회 운영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7. 1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